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734
--------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11

제출자 : 달성군



## 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가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3조에 따라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다문화 가족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지원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.
- 나. 조례로 규율하여 증가하는 달성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세대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 지원을 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나. 다문화가족 지원사업(안 제4조)
- 다.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등 심의 자문을 위한 다문화가족협의회 설치(안 제5조)
- 라.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(안 제13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 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나. 예산조치 : 예산부서와 별도 협의
- 다. 입법예고 : 2011. 8. 4. ~ 8. 24.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다문화가족"이란 「다문화가족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.
2. "결혼이민자 등"이란 「다문화가족 지원법」 제2조제2호에 따라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군수의 책무)**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-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,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군수는 군내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,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원사업)**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

2. 결혼이민자 등이 달성군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
3.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, 직업교육·훈련 및 일자리 연계
4.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, 부부교육, 부모교육,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
5.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·지원
6.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·건강에 대한 교육, 산전·산후 도우미 파견,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
7.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·번역 서비스의 제공
8.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·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
9.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해외고향 방문 및 부모초청 지원
10.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정보화 마을내에 화상상봉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상상봉 서비스 지원
11. 결혼이민자 등의 해외고향 우편운송비용 지원
12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5조(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)**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당연직위원 : 부군수, 국장, 다문화가족담당 실·과장
2. 위촉직위원
  - 가. 달성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

- 나.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다. 출입국관리사무소, 교육청,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
  - 라. 다문화가족관련 시민·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
  - 마.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
-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.

**제6조(협의회의 기능)**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, 연구 및 시책의 분석·평가에 관한 사항
3.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4.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, 재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7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8조(회의)**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의견청취 등)**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 
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10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 
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11조(위원의 위촉해제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
2. 사망, 국외이주,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3.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
5.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6.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

**제12조(위원수당 및 실비변상)**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이 아닌 위원의 참석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3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)**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하고,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재지정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.

**제14조(포상)**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, 개인,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5조(단체 등의 지원)**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